

Issue & Opinion

I. 국내 은행지주사의 배당 제한 조치 종료

→ 주주환원 확대 및 PBR 개선 효과 예상

II. 상장기업 ESG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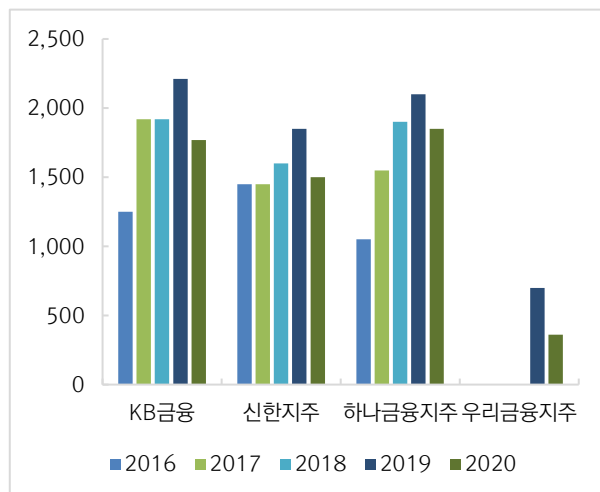
III. '하이트진로' 지정자료 허위제출 제재

→ 주주가치 훼손 우려 및 정보공개 필요성 제고

I. 국내 은행지주사의 배당 제한 조치 종료 → 주주환원 확대 및 PBR 개선 효과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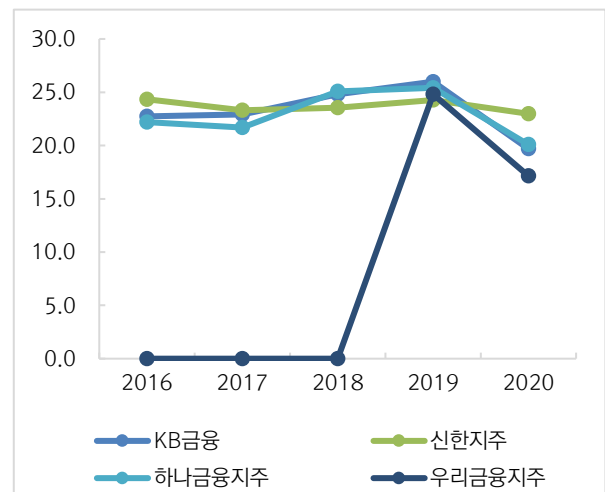
은행 및 은행 지주에 대한 배당 제한 조치¹가 6월 3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은행 및 은행지주의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지난해 국내 주요 은행지주의 배당성향은 KB금융 19.7%, 신한지주 23.1%, 하나금융지주 20.1%, 우리금융지주 17.1%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한 신한지주를 제외하고는 배당 제한 조치에 따라 모두 당기순이익 대비 20%이하의 현금 배당을 지급함. 지난해 지급된 배당금은 전년 대비 주당 배당금이 각각 KB금융 19.9%, 신한지주 18.9%, 하나금융지주 11.9%, 우리금융지주 48.6% 감소한 수준임.

그림1. 국내 주요 은행지주 주당 배당금



단위: 원
자료: 대신경제연구소, Dataguide

그림2. 국내 주요 은행지주 배당성향



단위: %
자료: 대신경제연구소, Dataguide

¹ 금융위원회는 2021년 6월 27일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를 의결하여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 회사가 배당(중간배당, 자사주 매입 포함)을 순이익의 20% 내에 실시하도록 권고함.

당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4대 은행지주는 배당정책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음. KB 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배당성향 3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한지주는 보통주 자본비율(CET1)이 12%를 초과할 경우 일부 자본을 유보 후 나머지를 주주환원에 사용할 것임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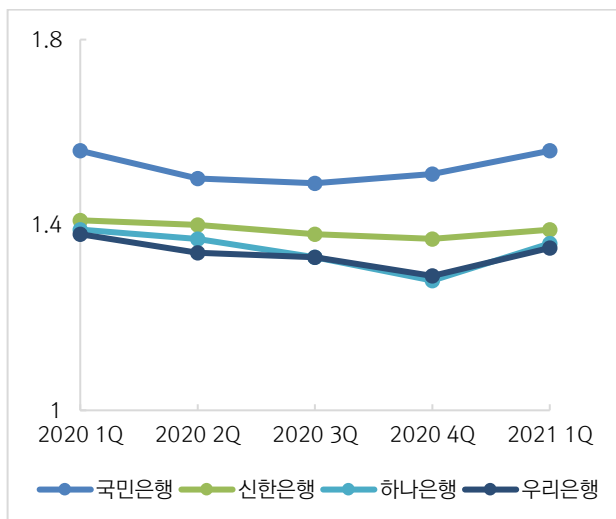
표 1. 국내 주요 은행지주의 배당정책

지주명	배당정책
KB 금융	배당성향은 30%(중장기배당정책목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 주주환원정책으로 중간배당, 자사주(매입/소각)도 검토 예정임.
신한지주	보통주자본비율 12.0% 초과하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경우, 적정규모의 자본 내부 유보 후 잉여 자본의 일부를 분기배당 또는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등에 사용함.
하나금융지주	코로나 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부터 중기적 목표로 설정한 배당성향 30%에 이를 때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배당성향을 높여 나가고자 함.
우리금융지주	중장기 경영계획에 근거하여 점진적으로 배당성향(2023년 회계연도 기준)을 30% 수준까지 상향토록 할 계획, 그 밖에 다양한 주주환원정책 추진을 검토할 예정임.

자료: 대신경제연구소, 각 사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

한편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이후 지속된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 하락세가 2021년 1분기에 상승 전환되었으며,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하였음에도 순이자수익 증가 등으로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². KB 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의 1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각각 1조 2,549억 원, 1조 1,659억 원, 8,193억 원, 6,153억 원이며 이는 전분기 대비(QoQ) 각각 74.3%, 27.4%, 28.0%, 28.6% 증가한 수치임. 자본 적정성을 나타내는 BIS비율은 KB금융 16.0%, 신한지주 15.9%, 하나금융지주 16.3%, 우리금융 13.6%로 모두 규제 수준을 충족하여 양호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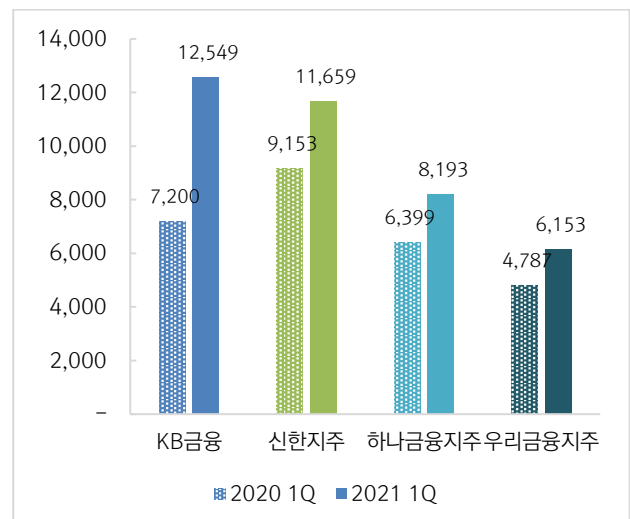
그림3.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NIM)



단위: %

자료: 대신경제연구소, 각 사 2021년 1분기 실적발표자료

그림4. 국내 주요 은행지주 지배주주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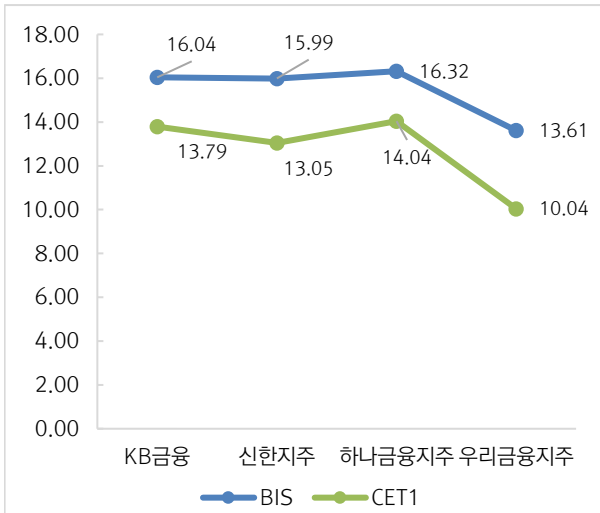
단위: 억 원

자료: 대신경제연구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² <‘21.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금융감독원, 2021.05.18.>, <‘21.1분기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 금융감독원, 2021.06.01>

은행 및 은행지주의 지배주주순이익 확대는 현금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을 위한 지급 여력의 증가를 의미하며, 배당 제한 조치 종료와 더불어 은행 및 은행지주의 주주환원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함. 또한, 주요 은행지주의 5% 이상 주요주주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및 연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배당 확대의 가능성은 더욱 높으며 배당 확대는 장기적으로는 저평가된 은행지주의 PBR 개선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평가됨.

그림5. 국내 주요 은행지주 자본적정성 비율(2021 1Q)



단위: %

자료: 대신경제연구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2. 국내 주요 은행지주 5% 이상 주주

지주명	주주명	지분율
KB 금융	국민연금공단	9.93
	JP Morgan Chase Bank	6.03
	BlackRock Fund Advisors	6.02
신한지주	국민연금공단	9.81
	BlackRock Fund Advisors	5.63
하나 금융지주	국민연금공단	9.88
우리 금융지주	예금보험공사	17.25
	국민연금공단	9.80
	노비스 1 호유한회사	5.62

단위: %

자료: 대신경제연구소, 각 사 분기보고서(2021.03)

(송민지 선임연구원 02-769-3002)

(오지혜 연구원 02-769-3100)

II. 상장기업 ESG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과제

2021년 중에 이사회내 ESG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상장기업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지난 2015년 및 2020년초에 신한지주와 KB금융지주가 ESG위원회(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주목을 받은 이후 5대 금융지주(KB, 신한, 우리, 하나, 농협지주) 모두가 ESG위원회 설치를 완료함. 더욱이 최근 2021년 이후에 한화그룹과 LG그룹 소속 모든 상장 계열사에 ESG위원회를 설치계획을 발표하는 등 동 위원회의 설치 흐름이 대형 상장사로 확산되고 있음.

특히, 4대 상장 금융지주사(KB, 신한, 우리, 하나)의 ESG위원회 신설 이후 위원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21년 3월 분기보고서 기준, 국내 4대 금융지주의 ESG위원회 이사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향후 금융회사에 신설되는 ESG위원회의 운영에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우선, 4대 금융지주의 ESG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된 점은 긍정적임. 그러나, ESG위원회 전체 위원이 이사회 전체 위원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KB지주, 우리지주)과 실질적으로 ESG위원회 심의 기능 이외 일정 안건에 대해 <의결기능>을 부여한 곳은 KB지주와 우리금융지주 2곳뿐 임.

1) 이사회의 등기이사 전원을 ESG위원회에 배정한 것은 ESG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음. 그러나, ESG위원회가 기업의 비재무 평가요소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이사회와 ESG위원회가 동일한 이사로 구성되는 것은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판단됨. 또한, 2) 현재 관련 규정에 의해 이사회내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이사회에서 변동되지 않는 것처럼, ESG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지금은 최고 경영진이 ESG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향후에 최고 경영진이 ESG위원회에서 빠질 경우에 ESG위원회의 실행력이 이전보다는 현저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표1. 국내 4대 금융지주의 ESG위원회 현황

	ESG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여부	이사회 위원과 동일 여부	의결권 부여 여부	신설 여부 (타 몇칭)
KB금융지주	O	O	O	신설
신한금융지주	O	X	X	변경(사회책임경영위원회)
우리금융지주	O	O	O	신설(2021년 3월)
하나금융지주	O	X	X	신설(지속가능경영위원회)

자료: Dart(2021년 03월 분기보고서 기준),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참고로, 그림1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ESG 도입단계를 보면, 현재 글로벌 금융회사의 수준은 ESG 리스크를 평할 수 있는 수준과 경영권 참여 및 주주권을 행사하는 중간 수준으로 파악됨. 반면 국내 금융기관 ESG도입 수준은 아직 ESG 상품/투자 관련 정책 및 지침,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정도 수준으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자료: 금융위원회, <ESG 국제동향 및 국내 시사점>, 2021.02

(안상희 본부장 02-769-3020)

III. ‘하이트진로’ 지정자료 허위제출 제재 → 주주가치 훼손 우려 및 정보공개 필요성 제고

2021년 6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소유의 법인 및 친족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힘. 하이트진로는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17~2018년동안 (주)연암, (주)송정 / 대우화학(주), 대우패키지(주), 대우컴바인(주) (이하 대우화학(주) 등 3개사) 등 5개사 및 친족 7명, 2017~2020년 기간 동안 (유) 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하여 제출함.

누락된 기업 다수는 내부거래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대우화학, 대우컴바인은 2021년 5월 기준 내부거래비율이 각각 89.0%, 92.3%로 사실상 매출 대부분을 내부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연암, 송정, 대우화학 등 3개사, 총 5개사는 박문덕 회장의 친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에 포함되므로 이들 회사를 누락한 것은 사익편취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판단됨.

표 1. 누락된 계열회사 내부거래 비중

(2021.05 기준, 단위: 백만원)

소속회사	국내		해외	전체매출총액	내부거래비율	미편입 계열기간
	계열사 매출액	매출총액	매출총액			
연암	6,743	19,403	1,586	20,989	32.1%	'03.04.01.~'19.05.14.
송정	359	8,520	-	8,520	4.2%	'03.04.01.~'19.05.14.
대우화학	14,731	16,547	-	16,547	89.0%	'06.12.26.~'19.05.14.
대우패키지	1,917	11,020	-	11,020	17.4%	'05.07.13.~'19.05.14.
대우컴바인	10,943	11,856	-	11,856	92.3%	'16.06.30.~'19.05.14.
평암농산법인	-	1	-	1	0.0%	'05.10.01.~'20.09.24.

출처: 대신경제연구소, 대규모 기업집단 현황공시

표 2. 하이트진로그룹 내부거래 비중

(단위: 백만원)

년도	국내계열사계	해외계열사계	매출액총계			내부거래 비중
			소계	국내매출액 총계	해외매출액 총계	
2018.05	152,823	72,451	2,013,261	1,890,643	122,618	7.6%
2019.05	180,704	74,568	2,055,752	1,931,661	124,091	8.8%
2020.05	245,700	69,397	2,332,688	2,212,078	120,610	10.5%
2021.05	236,219	87,862	2,561,779	2,429,402	132,377	9.2%

출처: 대신경제연구소, 대규모 기업집단 현황공시

표 3. 하이트진로그룹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

(단위: 백만원)

년도	국내계열사계	해외계열사계	매출액총계			내부거래 비중
			소계	국내매출액 총계	해외매출액 총계	
2018.05	141,990	21,925	310,606	281,950	28,656	45.7%
2019.05	169,867	21,316	364,900	337,894	27,006	46.6%
2020.05	234,619	17,444	468,750	445,595	23,155	50.1%
2021.05	225,247	15,849	476,679	454,233	22,446	47.3%

출처: 대신경제연구소, 대규모 기업집단 현황공시

지정자료의 허위 제출은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망을 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주권익 침해는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은 동일인 명의로 신고해야 하는 만큼 동일인 및 기타 관계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업집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심형철 연구원 02-769-3965)

본 보고서는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와 정보를 사용하여 작성한 보고서로 강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를 참조하여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본 보고서를 분쟁에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라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